


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행정처분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
3. 같은 법 제14조의2 제8항에 의거하여 과외교습 중지기간 동안 처분 당사자의 과외교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(교습중지)에 관한 사항-

행정처분 내용	과외교습 중지기간	처분 사유
개인과외 교습중지(1년)	2017.09.18. ~ 2018.09.17.	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(교습장소 무단변경)

붙임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행정처분 명단(10명) 1부. 끝.

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

수신자 전국 시.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

★주무관

평생교육담당

지역사회협력과장

협조자

시행 지역사회협력과-12394 (2017.09.19.) 접수 평생교육건강과-10788 (2017. 9. 19.)
 우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3 /http://www.educw.go.kr
 전화번호 055-210-0582 /팩스번호 055-210-0590 / sunpink84@korea.kr / 비공개(6)